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02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조사지침서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조사지침서

2012. 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10
2. 법적근거	210
3. 조사연혁	210
4. 조사 기준 및 기간	210
5. 모집단 및 표본설계	210
6. 조사대상	210
7. 조사방법	211
8. 조사항목	211
9. 추진 일정	212

II. 현장조사

1. 조사원의 기본자세	214
2. 준비조사	216
3. 가구 관리 요령	218
4. 현장조사 요령	222
가. 면접조사 요령	222
나.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222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223
5. 조사표 작성요령	225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225
나.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226

III. 내용검토

1. 기본 점검사항	229
2. 문항별 점검사항	230
3. 문항간 일관성 유지 관련 유의 사항	253
4. Base Check	255

IV. 부록

1. 주택평수 환산표	258
2. 지역 코드 입력 기준	259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 기준 및 기간
5. 모집단 및 표본설계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조사항목
9. 추진 일정



제 1 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정부 및 전문가 또는 각계 각 층의 주거관련 연구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다양한 국민계층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을 수립 하도록 지원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법적근거

- 주택법 제5조(주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주거실태조사)에 의거하여 실시함

3. 조사연혁

- 2006년 : 제1회 주거실태조사 실시(민간 리서치 조사)
- 2008년 : 제2회 주거실태조사 실시(민간 리서치 조사)
- 2010년 : 제3회 주거실태조사 실시(통계청 조사)
- 2012년 : 제4회 주거실태조사 실시(민간 리서치 조사)

4. 조사 기준 및 기간

- 조사 기준 : 2012. 5. 31
- 조사 실시기간 : 2012. 6. 26 ~ 9. 30

5. 모집단 및 표본설계

- 모집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일반조사구와 총조사 이후 신축된 아파트
 - 섬 조사구(제주도는 포함), 기숙 시설 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등은 제외
- 표본규모 : 전국 33,000가구

6. 조사대상

- 조사대상 :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표본 33,000가구의 가구주 혹은 배우자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

8. 조사항목

구분		세부구분	조사 항목
I	주택유형 및 점유상태	유형 및 점유상태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주택규모, 주택 방 수, 거주층수
II	현 거주 주택 특성	주택특성	주택의 가구 수, 건축연도, 내부시설 및 사용형태, 주택의 상태,
III	주택가격 / 임대료, 주택대출금 / 주거비부담	주택가격	현 주택가격
		임대료	현 주택 임대료, 월세 연체 여부, 월세 연체 사유
		주택대출금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자금의 조달방법, 구입·임차 자금 조달 방법의 비중,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액,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시점, 현재의 대출 잔액, 대출상환조건, 월 대출상환금
		주거비 부담	대출금 상환의 부담감, 현 주택 이외 주택 대출 여부, 월평균 생활비 및 주거비, 주택 구입가격 · 보증금 · 월세 · 주거비의 부담 정도, 부담 지출 항목
IV	이사경험 및 주거만족도	이사경험	현 주택 거주 시점, 이사 횟수, 이전 주택의 거주기간, 이전 거주지역, 현 주택 이사 이유
		주거만족도	현 주택 만족도, 현 주택의 불만족 이유, 주거환경 만족도, 현 주택 및 이전주택의 설비상태 · 질적수준, 현 주택 및 이전주택의 가격수준 비교, 현 주택 및 이전주택의 주거환경 여건
V	주택 가치관	주택 가치관	주택 가치관(자가 소유, 주택구입가격, 소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부담가능 주택, 부동산 투자, 전세 및 월세, 주택시장), 3인 가족의 적정 주택 규모
VI	가구주가 된 이후의 주택 구입경험 및 소유현황	구입경험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유, 현 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주택 여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간, 생애최초 구입주택에서의 거주기간, 주택 구입 횟수
		소유현황	현 주택 외 주택 소유여부, 가족명의로의 주택 소유 정도, 현 주택 이외 주택의 소유 목적, 현 주택 이외 주택의 유형, 현 주택의 매각의사와 이유, 임차 주택의 거주 이유
VII	향후 2년 내 이사계획 희망주택	이사계획	현 주택에서의 거주희망 기간, 향후 2년 내 이사계획의 이유
		희망주택	희망주택의 유형, 희망주택 규모, 희망주택의 방 수, 이사 희망 지역, 희망 주택의 점유형태, 자가 마련 계획, 계획 중인 주택가격 수준, 희망 용자금액, 2년 내 이사시 현 주택의 처분 방법,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 의향,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장래 거주목적 이외의 주택 구입의향, 여가 · 휴양 목적의 주택 구입의향, 주택청약상품 가입 여부, 주택 청약 통장 보유 개수, 주택청약 신청 계획
IX	가구현황	가구현황	현 가구원 수, 가구주의 출생연도, 가구주의 결혼 연도, 세대 구성 형태, 자녀의 수, 동일 가구 거주 자녀 수, 만자녀의 연령, 장애인 등록 가족 여부, 고령자 가구원 구성 여부, 기초생활수급 여부, 교육 정도, 가구주의 직업/근무형태, 월평균 가구 총 소득, 통근 수단 및 시간



9. 추진 일정(안)

(1) 조사 준비

■ 조사항목 및 조사표(안) 작성	: 2012. 6
■ 통계조사 승인변경신청	: 2012. 6
■ 지침서 작성	: 2012. 6
■ 조사인력 채용	: 2012. 6
■ 조사표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	: 2012. 6
■ 조사명부 4부 인쇄(LH, 갤럽, 미디어, 지역관리자 보관)	: 2012. 6
■ 설문지 Pre-Test	: 2012. 6

(2) 현장 조사

■ 조사원 교육(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집합교육)	: 6. 26~28
■ 본 조사 실시	: 6. 28 ~ 8. 20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입력(보완 실사)	: 7. 06 ~ 9. 15
■ 조사표 정리 및 제출(실사기관 ⇒ LH연구원)	: 7. 20 ~ 9. 30

(3) 결과 분석 및 공표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 7. 10~9.30
■ 조사결과 제출(실사기관 ⇒ LH연구원)	: 9. 30
■ 조사결과 공표	: 10월 중



제 2 장 현장조사

1. 조사원의 기본자세
2. 준비조사
3. 가구 관리 요령
4. 현장 조사 요령
 - 가. 면접조사 요령
 - 나. 조사불응/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5. 조사표 작성요령
 -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나.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제 2 장 현장조사

1. 조사원의 기본자세

가. 현장조사 시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해두고, 반드시 조사관리자나 담당직원과 상의한 후 기입하도록 한다.

▷ 현장조사 조사원 기본 자세

현장조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조사지침의 명확한 숙지와 성실한 조사
2.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3. 비표본오차의 최소화
4.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
5. 기타 현장조사 직원의 품위 유지

나. 조사원의 의무 및 주의사항

- 조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 전념한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 담당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완성된 조사표는 그때그때 조사관리자나 담당직원에게 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관리자나 담당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조사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조사상의 어려움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조사지침서상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동일한 지침이 시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통계법(개정법률 제9557호 2009.4.1.공포) 관련 조문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다. 조사원 준비물

- ① 조사표 및 필기도구
- ② 조사구 요도 및 가구 명부
- ③ 조사지침서 및 조사원 교육자료
- ④ 조사협조 공문
- ⑤ 조사원 신분증 및 명찰
- ⑥ 답례품
- ⑦ 홍보 리플렛

2. 준비조사

가. 사전 확인 및 현장준비 사항

-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의 명부 좌측에 가구 일련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정해진 규칙대로(p.12-13 참조) 조사대상 가구를 확인한다.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가구 방문에 대한 사전 협조 (필요시 협조공문 전달)를 얻고, 조사를 홍보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 통/반장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 홍보물 및 협조용 답례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협조 유도
- 조사대상 가구 찾기
 - 가구 명부상의 주소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대상 가구인지를 결정한다.
 - 가구명부 상 기재된 가구주 성명이 일치 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 가구에 해당된다



나. 사전 대상가구 적격여부 확인

- ① 본 조사 전 1~2일차에는 조사명부와 요도를 대조 확인한다.
 - ②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우선 조사대상 적격가구인지 확인 한다.
(집단가구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조사대상 제외가구’ p.21 참고)
 - ③ 적격가구인 경우, 홍보용 리플렛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본 조사 기간에 재방문함을 알려 준다.
 - 준비조사 기간에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본 조사에 들어 가도록 함
 - 접촉하게 된 가구원에게 조사목적과 가구선정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조사완료 후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됨을 알려줌
- ※ 가구원에게 다음 방문일시를 약속받고, 가구원이 없는 경우 면접원 휴대폰 번호를 기입한 안내장을 문틈으로 넣고 다음 방문일시를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사항은 주거실태조사 관련 상담전화 (☎ 02-6261-0143)로 문의하도록 함
- ④ 빈집, 멸실 등 조사가구 대체 사유 발생 시 정해진 규칙대로 대체하고, 3회 이상 방문 시에도 가구주 부재의 경우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대상가구를 대체한다.



3. 가구 관리 요령

가. 조사구 확인 및 교체

*조사구란?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일정한 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구역(보통 1조사구에 60가구 정도가 포함됨)

■ 조사구 경계 확인

- ❖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를 직접 방문하여, 배부된 명부의 거처와 일치하는지 파악한다.(본 조사 전 1~2일차)
- ❖ 조사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지 한다.
 - 조사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다수 멸실 등)가 발생하여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 교체

- ❖ 조사구 교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구 멸실 및 재개발 등에 의해 조사구내 50% 이상이 다른 주택으로 바뀐 경우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후 대체조사구로 모두 교체한다.
 - 정해진 방법에 의해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구 전체를 조사하여도 1개 조사구에서 10부미만의 샘플이 확보될 경우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한 대로 수행한다. (비슷한 유형의 대체조사구를 받아 나머지 샘플수를 확보한다)

※ 대체조사구 보고 및 처리 절차

보고절차 : 조사원→조사관리자→지역담당자→실사기관담당자→LH 담당자

처리절차 : LH담당자→실사기관담당자→지역담당자→조사관리자→조사원

※ 경미한 사항은 실사기관담당자 처리 후 사후 보고



나. 가구명부 작성 및 조사대상 가구

조사구 내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본명부에 기재된 시작가구에서 규칙대로(조사구 가구 수 ÷ 10) 건너뛰어 총 10가구를 조사한다.

■ 조사원은 제공받은 조사구 명부에 가구별 일련번호 부여

- ❖ 첫번째 가구(예시이후)의 번호가 1이 되며 이 후 가구마다 1씩 증가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빈집'도 번호를 부여함)

■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

- ① 조사구내 가구수 ÷ 10 = X, X번째 가구부터 X번씩 건너뛰어 10번째 가구까지가 조사대상 가구임(예1 : 조사구가 60가구이면 6번째 가구가 시작가구이고 이후 6번째 가구를 10개 조사)

※ 예 : 조사구가 55가구이면 5번째 가구가 시작가구이고 이후 5번째 가구마다 10개 가구 조사

- ② 순서대로 조사하여 조사구 끝번까지 갔으나 샘플이 10개가 안되면 앞에서 다시 순서대로 조사

※ 예 : 5→10...55번 가구 조사 후, 6→11→16...56번 순으로 조사

- ③ 조사대상가구의 대체 사유가 발생 시에는 조사관리자에게 요청한 후 처리한다.

※ 예 : 6번가구 3회 방문시 부재면 7번가구 조사, 다음은 12번가구 조사

- ④ 조사원은 실제 조사 시 변동사항은 빨간색 펜으로 수정(두줄 그음)하며 수정 시에는 해당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한다(명부 우측에 작성).

- ⑤ 가구명부가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조사관리자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다.

※ 시·군·구 지역관리자는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지역별 연령비율 맞춤



※ 조사대상 가구 선정 시 주의할 점

- ▶ ‘①’의 경우 : 가구명부 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경우
다음 순서의 가구를 조사, 나머지 순서는 기존대로
- ▶ ‘②’의 경우 : 가구명부 상 ‘빈집’이지만,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되어 준비조사
확인 결과 실제로 사람이 가구에 거주할 경우 본 조사를 실시한다.

〈 예시 3 〉

002	001	노은동	5통	209-1	이새롬	1	1	0	○			○								1
	002	노은동	5통	209-1	김구라	4	2	2	○			○								2
	003	노은동	5통	209-1	유재석	2	1	1	○			○								3
003	001	노은동	5통	209-1	박명수	4	2	2	○			○								4
004	001	노은동	5통	209-1	최 구	2	0	2	○			○								5
005	001	노은동	5통	209-1	이재상	1	1	0	○			○								6
①	002																			7
007	001	노은동	5통	209-1	강바다	5	2	3	○			○								8
008	001	노은동	5통	209-1	이성용	3	1	2	○			○								9
	002	노은동	5통	209-2	강인호	3	2	1	○			○								10
②	003	노은동	5통	209-2															○	11
008	001	노은동	5통	209-2	위 성	1	1	0	○			○								12
	002	노은동	5통	209-2	윤지숙	2	1	1	○			○								13
009	001	노은동	5통	209-2	남상곤	1	1	0	○			○								14
010	001	노은동	5통	209-2	조우승	2	1	1	○			○								15
	002	노은동	5통	316-5	최상현	2	2	0	○			○								
	003	노은동	5통	316-5	변 효	2	1	1	○			○								
011	001	노은동	5통	316-5	홍사범	3	1	2	○			○								

■ 조사가구/조사구 대체

- ‘불능가구’, ‘빈집’ 등이 존재하여 부득이하게 시작가구로부터 10가구를 조사하지 못할 경우, 조사구 내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다음 가구를 조사한다.
- 조사가구 및 조사구 대체는 p.11 참조

■ 신축 주택 명부 작성

- 일반주택의 50% 이상이 멸실되고 신축된 경우, 대체조사구가 없으며, 조사구 주변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 보고단계를 거쳐 지시대로 신축주택에서 나머지 명부를 작성하여 조사한다.



다. 신축아파트 거처번호 부여 요령

■ 신축아파트 조사구명부 작성 기준

(주소, 아파트명, 세대수, 평형별 할당만 제공)

- 신축 아파트 조사구 명부는 아래 조사구명부 양식에 조사원이 가구번호, 조사대상 동/호, 평형을 기입한 후 시작한다.
- 아래 예는 총 10표본(33평 미만 5, 33평 이상 5)이 배정된 “진흥아파트”의 경우로, 32평 첫 번째 동인 201동에서 30가구를, 45평 첫 번째 동인 203동에서 가구번호를 30개 기입하고 각 5표본씩 조사한다.

가구 번호	조사 대상	동/호	평형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07-2	아파트명	진흥아파트	33평 미만	34평 이상
				세대수		1029	5	5
				조사원 메모란				
소-1		201-201	32					
소-2		202	32					
소-3		203	32					
소-4		204	32					
소-5		301	32					
소-6	√	302	32					
.		.	32					
.		.	32					
.		.	32					
소-30	√	404	32					
.		203-201	45					
대-1		202	45					
대-2		203	45					
대-3		204	45					
대-4		205	45					
대-5		206	45					
대-6	√	301	45					
대-7		302	45					
.			45					
대-29		.	45					
대-30	√	.	45					

■ 신축아파트 조사구명부 작성 요령

- 관리소(또는 근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하여 세대수 확인
- 관리소(또는 부동산중개소)에 문의하여 분양면적 33평(전용 25.7평 또는 84m²)미만인 동(棟)과, 이상인 동을 확인
- 33평 미만인 동에서 동번호 중 가장 먼저 시작하는 동을 선정하여 1층을 제외하고 2층의 첫 호부터 위층으로 표본의 6배수(예: 7표본인 경우 42가구)의 가구번호 기입(예: 소-1, 소-2... 소-30), 33평 이상의 경우도 동일하게 기입
- 시작가구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특정번호에서 시작하여 동일한 등간격(6호 간격)으로 조사대상을 지정한 후 조사시작



※ 1개동에 33평 미만과 이상이 섞여있는 경우 비율이 높은 평형만 조사

※ 조사대상 동에서 표본이 부족할 경우 인접한 다음 동을 선택하여 번호 부여 후 동일방법으로 조사

(1동 6호까지 있을 경우 예 : 206→ 212 … 순으로 하다 표본이 부족하면, 201→207… , 202→208…, 203→… 순으로 조사해도 표본이 부족할 경우 다음 동 조사)

4. 현장조사 요령

가. 면접조사 요령

▷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직원은 면접조사 시 응답자의 응답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3.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4.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5.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나.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 조사불응 : 면접 거부나 응답기피 등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조사관리자 또는 담당 관리자의 동행으로 설득한다.
- 장기부재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최소 3회) 방문
- ※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재와 불응이 계속될 경우, LH·담당자의 승인 후 지침(가구대체 방법 p.11 및 p.8 참조)에 따라 가구 대체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Q. “주거실태조사는 무엇입니까?”

A. 주거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로, 가구 특성, 주거 및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관하는 조사입니다.

Q. “어디서 조사합니까?”

A.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갤럽과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주거실태조사는 왜 합니까?”

A.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정부 및 전문가 또는 각계 각 층의 주거관련 연구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다양한 국민계층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Q. “주거실태조사에 꼭 참여해야 합니까?”

A.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통계법 제32조)

Q.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하고,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응답자의 가구는 이 통계에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Q. “토지주택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A. 토지, 주택, 도시, 건설 분야의 연구개발 노하우를 보유한 토지주택공사(LH)의 부설 연구원으로서 LH 사업에 적용 가능한 선진 정책을 발굴하고 최적화된 계획기법 및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의 국토/주택 정책 수립의 방향타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미디어 리서치는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A. 여론 조사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주거실태조사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 다양한 조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A.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조사된 내용은 이름을 제외하고 모두 전산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름을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릴 경우 무리하게 응답을 받지 말고, 기본적인 인구통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취지 정도만 이야기 한 후에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응답을 받도록 한다.)

Q. “조사된 자료가 과세자료 등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나요?”

A.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통계조사 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과세자료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
위 사항을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통계법 제39조).



5. 조사표 작성요령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사표 작성 대상 및 기준

-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가구’이며,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에게 응답을 받는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은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 단, ‘가구주’에 대한 질문의 경우 가구주를 기준으로 응답 받는다.
- ❖ ‘가구원’의 경우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 ❖ 월평균 소득 및 생활비(주거비)는 2011년(2011. 1. 1.~12. 31.)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조사표 작성 방법

- ❖ 조사단위 금액은 만원으로 하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 ❖ 숫자 기입 시 끝자리를 맞추고, 숫자 앞의 공란은 비워 둔다.
-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0”으로 표시하지 말고, 공란으로 남겨 둔다.
- ❖ 조사표 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펜을 사용하도록 한다.
- ❖ 조사표 수정시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정사항은 수정액이나 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빨간펜으로 두 줄을 그은 후 아래에 기입한다.
- ❖ 설문 진행 시 항목별 지시문에 따른 해당 문항으로의 이동에 주의하고, 각 설문의 보기항목별 지시문이 없는 경우는 바로 다음 문항으로 이동하여 설문을 진행한다
- ❖ 주관식(open) 문항을 기입할 때는 글자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자로 기입해야 한다.
- ❖ 작성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응답 대상자와 작성내용을 확인하여 착오기입, 조사 문항 및 항목 누락, 관련 조사 문항 간 로직 오류 등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내용검토 기간에 응답가구에 재질의를 할 경우에는 조사에 관한 전체 내용을 다시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점검한다.
- ❖ 설문지는 작성과정이나 작성 후에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한다.
 - 조사기간 중에 설문지가 분실 또는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조사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통계법(제39조)에 의거하여 처벌(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된다.



나. 조사관련 기본개념 및 설명

(1) 가구

■ 가구의 정의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주민등록 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 가구 유형

유 형	내 용	대상적격여부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적 격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 격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 격
	1인 가구	적 격
집단가구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부 적 격
	가족이 아닌 20인 이상의 가구(집단시설 가구)	부 적 격
외국인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부 적 격

■ 가구 수 구분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1가구로 조사한다.

-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도우미, 운전사 등)또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경우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 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하는 자취생인 경우

■ 조사대상 제외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6인 이상의 집단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인가구와 생계를 같이 하는 6인 이상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은 별도의 가구로 보며, 해당가구는 집단가구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외국인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구주 및 가구원

■ 가구주

-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 ❖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 가구주가 되는 경우는 현재 가구에서 분가하여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와 기존 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 ❖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과 무관하게 가구주가 바뀐 경우는 가구주가 바뀐 이유와 그 시기를 파악하여 응답 받아야 한다.

예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부모님이 가구주였으나 노환으로 인해 2년 전부터 아들이 가구주가 되었다.
 ⇒ 이 경우, 가구 구성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가구주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가구주가 된 시점 이후의 상황으로 응답 받는다.

■ 가구원

-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최근 3개월 이상 되었고, 조사당시에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 조사대상 가구원은 2012년 6월 1일 현재 혈연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 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 가구원 포함 여부

구 분	내 용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	- 출장, 친지 방문, 여행, 행상, 입원, 환자 간호 등으로 잠시(3개월 미만) 집을 떠나 외지(국내, 국외)에 있는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
	- 예비군 훈련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 구직이나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떠난 지 1개월이 되지 않는 가족
	-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 및 종업원, 5인 이하의 하숙생
	- 외국인, 외지에 살고 있는 배우자 ※ 직장 등으로 외지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등)의 경우 주된 거주지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군인 및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으로 입대한 가족
	- 학업 또는 직장 때문에 외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특수 병원, 부녀 보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족



제 3 장 내용검토

1. 기본 점검사항
2. 문항별 점검사항
3. 문항간 일관성 유지 관련 유의 사항
4. Base Check



제 3 장 내용검토

1. 기본 점검사항

- 표지 부분의 행정구역, 조사구 번호, 거처 및 가구 번호가 가구 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
- 응답자가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가 맞는지 확인
- 항목 건너뛰기 지시에 따를 경우 반드시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항목별 점검사항에 따라 정확한 기준에 따라 응답되었는지 확인
- 문항별 제한 조건에 맞게 조사되었는지 확인
 - 모든 문항은 가구주가 된 이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함



2. 문항별 점검사항

▪ (문항 1) 주택의 유형

1. 귀하의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현재주택: _____ 직전주택: _____)

- | | | |
|---------------|-----------------------|-----------------------------|
| ① 일반 단독주택 | ② 다가구 단독주택 | ③ 연립 주택 |
| ④ 다세대 주택 | ⑤ 아파트 | ⑥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여관 등) |
| ⑦ 주택이외 오피스텔 등 | ⑧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 |

[★ 응답 작성시 유의 사항]

-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외관상으로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의 주택유형 정의의 기준을 숙지하고 응답 받을 것

[주택의 기본 정의]

-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둘째,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셋째,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주택의 유형 항목별 정의]

① 일반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② 다가구 단독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계량기가 1개임. 전체층(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이하인 경우



③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④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동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됨



⑤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



⑥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

※ 상가, 학원, 공장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살림하는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해당





⑦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거와 사무공간을 겸용으로 쓸수있는 건축물로써 2010년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 가능.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개별 등기 가능.

※ 주거 용도가 아닌 사무 용도로만 쓰일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



⑧ 기타

- 쪽방 등 사람이 거주하나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거처에 해당
-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나 위에서 예시되지 않은 주택이외의 거처가 해당
- 기숙사, 보육원, 양로원, 요양원, 기도원 등과 같이 집단거주를 위한 구조물이 해당

※ 숙박업소의 투숙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주인은 조사대상에 해당)

※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집단가구, 하숙생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의 구분

주택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다가구 단독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계약시 지번까지만 기재
	영업점용 단독주택	-	-	주거부분이 50%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규모가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음
	다세대 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계약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함



■ (문항 2) 주택 점유 형태

2. 귀댁의 **주택 점유 형태**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현재주택: _____ 직전주택: _____)

- | | | | |
|-------|--------|----------|------|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부 월세 | ④ 월세 |
| ⑤ 사글세 | ⑥ 무상거주 | ⑦ 연세 | |

[항목별 세부 정의]

- ① 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가구주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
- ② 전세: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③ 보증부 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 ④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 ⑤ 사글세: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해 가는 경우
- ⑥ 무상거주: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
※ 유의사항 : 땅은 국가, 지자체 등의 소유로 본인 소유가 아니고, 주택은 자신 소유인 경우, '자가'임
- ⑦ 연세 : 제주도 및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1년치 월세를 선납하고 계약하는 제도



■ (문항 3) 임대 주택 유형

3. (문2의 ②③④⑤⑦에 해당할 경우 응답)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현재주택: _____ 직전주택: _____)

- | | |
|--------------------------|--------------------------------|
| ① 일반 민간 전월세 | ② 정부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
| ③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 ④ 정부가 지원하는 다가구 매입임대(기존주택 매입임대) |
| ⑤ 정부가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 ⑥ 정부가 공급한 재개발 지구의 50년 공공임대주택 |
| ⑦ 정부가 공급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⑧ 장기전세주택 |
| ⑨ 민간업체가 건설한 5년, 10년 임대주택 | ⑩ 회사(혹은 직장)에서 공급(혹은 지원)하는 사택 |
| ⑪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 |

★ [응답시 유의 사항]

- 임대 및 임대가 섞여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택의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임할 것(응답자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음)
- LH 임대단지는 단지전체가 같은 임대 유형이거나 영구와 10년/50년 임대가 혼합된 경우 있음. 서울시에는 분양/영구, 분양/50년이 혼합된 단지가 있으며,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동도 있음

★ [항목 정의 : 공공 임차 종류 설명]

② 정부가 공급하는 영구임대 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할 수 있는 주택
- 전용 7~12평 규모, 영구적 임대

③ 정부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

- 무주택 세대주에게 시가의 70%의 가격으로 공급
- 30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주택. 분양전환 불가능
- (18평 이하) 무주택 세대주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
- (18~24평)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

④ 정부가 지원하는 다가구매입임대(‘기존주택매입임대’로 용어 변경, 같이 사용)

-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10년까지 거주 가능)
- LH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후 임대(수도권 전 도시 및 지방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매입 후 임대 가능)

⑤ 정부가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 ⑥ 정부가 공급한 재개발 지구의 50년 공공 임대 주택
- 분양전환 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전용 7~15평 규모
- ⑦ 정부가 공급한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공공이 건설, 5/10년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
- ⑧ 장기전세주택
- 서울시의 시프트(Shift) 주택(20년 장기전세)
 - LH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10년 이상 장기 전세 주택
 -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10년, 20년 동안 전세로 살 수 있음

■ (문항 4) 주택 규모

4. 귀댁의 **주택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분양면적 (계약상의 면적)	실제 사용면적 (응답가구가 사용하는 주거전용공간만 기입)
현재 주택	m ²	m ²
직전 주택	m ²	m ²

- ※ 1. 면접원: 평단위 환산표 참조(예시: 1평=3.3m²), 단독 주택은 실내 면적만 기입함
2. 실제 사용면적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면접원은 이를 꼭 확인해야 함

[응답 작성 유의 사항]

- 아파트 거주자는 분양면적과 실제 사용면적 모두 기재
-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거주자는 실제 사용면적은 반드시 기재
- 응답자가 면적을 잘 모를 경우에는 주변 부동산 중개소에 문의 및 확인

※ 평수의 m² 환산은 지침서 부록1 참조



■ (문항 8) 주택 건축년도

8.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 | | | |
|----------------|----------------|----------------|----------------|
| ① 2010년 이후 | ② 2005 ~ 2009년 | ③ 2000 ~ 2004년 | ④ 1995 ~ 1999년 |
| ⑤ 1990 ~ 1994년 | ⑥ 1980 ~ 1989년 | ⑦ 1970 ~ 1979년 | ⑧ 1969년 이전 |

※ 응답자 또는 면접원이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 가능함

[응답 작성 요령]

- 건축년도는 건물이 완공되어 최초 입주가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 일자를 말한다.
- 응답자가 정확히 모르는 경우 근처 부동산중개소에서 협조요청 하여 기재한다. (또는 집주인에게 문의)
- 신축의 경우(뼈대를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 집을 지은 경우) 이 주택은 새로운 주택이므로 건축년도는 신축한 연도로 응답받는다.

※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 참조하여 기재가 가능하다.

- 부동산정보포털 접속 ⇒ 민원열람 ⇒ 토지건물기본정보 ⇒ 주소입력 ⇒ 건축연도 및 면적 확인
- 검색사이트 부동산 매물에서 아파트, 빌라 등을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 (문항 9) 시설/난방 종류

9.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내부 시설과 사용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사용 형태	종류
1) 부엌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① 입식 ② 재래식
2) 화장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① 양변기가 설치된 수세식 ② 양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수세식 ③ 재래식
3) 목욕시설	① 단독 사용 ② 공동 사용 ③ 없음	① 온수 ② 비온수
4) 난방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 4-1) 설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개별난방 → 4-2) 난방 연료는 무엇입니까? ① 도시가스 보일러 (LNG) ② 기름 보일러 ③ 프로판 가스 보일러(LPG) ④ 전기 보일러 ⑤ 전기 보일러와 태양열 보일러 혼용 ⑥ 연탄 보일러 ⑦ 연탄 아궁이 ⑧ 기타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응답 작성 요령]

- 아파트 거주자는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개별 난방응답 가능
- 아파트 이외 거주자는 ③ 개별난방 만 응답 가능
- ※ 아파트 거주자가 개별 난방일 경우, ③번 이후의 연료 방식 응답

[보일러 종류 세부 설명]

- ⑥ 전기보일러: 전열에 의해 물을 가열하여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 ⑦ 전기보일러와 태양열보일러 혼용 : 주로 시 외곽에서 주로 사용
- ⑧ 연탄보일러: 공동주택에서는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에서 일부 사용.
단독주택 등에서는 아직도 이용



7) 누전차단기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8) 화재 감지기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시설 설명]

1) 누전 차단기



주택내 전기시설에
누전이 발생하였을 때,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2) 화재 감지기



화재 발생시 연기와 열을
조기에 감지하고 내부에
장착된 경보장치에서
경보음을 출력하여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장치

■ (문항 10)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

10.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①불량	②보통	③양호
1) 집의 구조물 (건고, 균열 상태)	1	2	3
2) 방수 상태 (습기가 많거나 빗물이 새는 정도)	1	2	3
3) 환기 상태 (창문 개폐 여부, 통풍 상태)	1	2	3
4) 방음 상태 (이웃간 혹은 층간 소음)	1	2	3
5) 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피해 등) 안전성	1	2	3
6) 화재로 부터의 안전성	1	2	3
7) 소방차 진입 용이성	1	2	3
8) 집의 전체적인 상태	1	2	3

[응답 작성 요령]

- 7) 소방차 진입 용이성을 제외한 1)2)3)4)5)6) 항목은 주택 내부의 상태에 대해 평가 받는다.
- 4) 방음 상태(소음 정도)는 외부와의 소음 차단 정도, 층간 소음을 기준으로 평가 받는다.



■ (문항 14) 현재 주택 구입/임차 자금 비중

14. 구입자금 혹은 임차자금을 100으로 볼 때 다음 각 해당사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달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해당 여부		조달 내역(%)
	①해당	②해당사항 없음	
1) 가구주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1	2	
2) 부모, 친지, 자녀 등으로부터 받았으나,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 (증여, 상속 등)	1	2	
3) 부모, 친지, 자녀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	1	2	
4)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자금	1	2	
5) 직장에서 대출 받은 자금	1	2	
6)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	1	2	
합계	-		100%

[응답 유의 사항]

- 조달 내역은 모두 합해서 100이 되어야 한다.

■ (문항 22) ★ 생활비/주거비

22. 귀댁의 지난 1년간(2011년) 월평균 **생활비 및 주거비**는 얼마였습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월평균 생활비 월 만원

그 중 월평균 주거비 월 만원

※ 생활비: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식비, 의복비, 주거비(월세 제외), 가구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의 월평균 합계
(단, 주택 임대료 및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특별한 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제외)
※ 주거비: 월세를 제외한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 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 (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 리모델링과 같은 비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

[생활비/주거비의 구체적 정의]

- 생활비: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식비, 의복비, 주거비, 가구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의 월평균 합계(단, 주택 임대료 및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특별한 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제외)
- 주거비: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 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비일상적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



■ (문항 23, 문항 24) 주거비의 기준

23. 귀댁은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만큼 부담을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자가 거주 가구]

구 분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②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약간 부담	⑤ 매우 부담
1-1) 주택 구입가격에 대한 부담	1	2	3	4	5
1-2) 매달 주거비 부담	1	2	3	4	5

23. 귀댁은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만큼 부담을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자가 거주 가구]

구 분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②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편	③ 보통	④ 약간 부담	⑤ 매우 부담
1-1) 주택 구입가격에 대한 부담	1	2	3	4	5
1-2) 매달 주거비 부담	1	2	3	4	5

24. 귀댁에서 아래의 가계 지출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부담이 큰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 | |
|---|------------------------------|
| ① 매달 주거비 | ② 매달 집 월세(상가월세 제외) |
| ③ 교육비(학비,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 | ④ 보건의료비(의약품 구입, 병원 진료비 등) |
| ⑤ 식료품비(쌀, 식·음료, 채소·과일·야채 등 구입) | ⑥ 의류·신발비(내의 및 의복비, 신발 구입 등) |
| ⑦ 교통비(자가용, 택시,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 | ⑧ 통신비(전화, 핸드폰, 인터넷 등 통신 이용료) |
| ⑨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금 상환 | ⑩ 각종 보험료 및 저축 |
| ⑪ 오락·문화비(영화, 스포츠 관람 등 문화 활동, 여행비, 기타 오락비) | |
| ⑫ 기타 잡비(외식비, 교제비, 이미용 서비스료 등) | |

★ [주거비 정의]

- 주거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 유지비, 일반 관리비, 화재보험료 등(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비일상적 주택 수선·유지비는 제외)

- (문항 28-1) 지역코드 입력

28. 귀댁은 현재 주택으로 이사 오기 바로 전에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국외			

28-1. 시/군/구 이름 ()

(코드 입력 -)

※ 지역코드는 조사원이 입력

[응답 작성 요령]

- 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재 후 나중에 부록2의 코드번호 6자리를 보고 기재한다.
시군/구 - 6자리 기입

■ (문 36) 주택에 대한 가치관

36. 다음은 평소 귀하가 주택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각 해당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1	2	3	4	5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소형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1	2	3	4	5
4) 정부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더 늘어나야 한다	1	2	3	4	5
5) 내 경제형편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충분히 있다	1	2	3	4	5
6) 금융상품(예금,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더 선호한다	1	2	3	4	5
7) 집을 얻는다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좋다	1	2	3	4	5
8) 가능하면 아파트에 살고 싶다	1	2	3	4	5
9) 향후 2-3년간 주택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1	2	3	4	5
10) 향후 2-3년간 전세 및 월세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1	2	3	4	5

[응답시 유의 사항]

- 일반적 기준으로써의 가치관을 평가 받는다.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국한되어 응답하지 말 것을 주지시킨다.



■ (문항 40) 생애 최초 주택

40.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은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입니까?

※ 구입은 신규주택 분양 또는 기존주택 구입을 말함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③ 해당사항 없음

41. 그럼, 귀댁은 생애 최초 주택을 언제 구입하셨습니다?
 년도

42.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까지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년

43. 생애최초 구입한 주택에는 얼마나 거주하셨습니다?
 ① 거주하지 않았다 ② 년 동안 거주

[응답 작성 요령]

- 생애 최초의 기준 : 가구주가 된 이후에 구입한 주택(상속이나 증여는 제외)

■ (문항 40, 문항 41, 문항 42, 문항 43) 응답 대상

40.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은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입니까?

※ 구입은 신규주택 분양 또는 기존주택 구입을 말함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③ 해당사항 없음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41. 그럼, 귀댁은 생애 최초 주택을 언제 구입하셨습니다?
 년도

42.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까지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년

43. 생애최초 구입한 주택에는 얼마나 거주하셨습니다?
 ① 거주하지 않았다 ② 년 동안 거주

[응답 작성 요령]

- ② 아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주택 외의 주택이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인 경우
문항 41, 문항 42, 문항 43 응답

■ (문항 48-1, 48-2) 주택 매각 질문

48.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매각 의사와 그 이유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48-1. 주택을 파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48-2로 이동 ② 없다 ➡ 문49로 이동 ③ 아직 잘 모르겠다 ➡ 문49로 이동

【보기카드 제시】

48-2. 그럼, 주택을 매각 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illegible]

[응답 작성 요령]

- 현재 살고 있지 않아도 소유한 주택 중 1채라도 매각 의사 있으면 기재한다.

■ (문항 52) 향후 희망 주택 유형 : 문항 1 주택 유형 설명 참고

52. 귀댁은 어떤 주택 유형으로 이사 가실 계획이십니까?

- ① 일반 단독주택 ② 다가구 단독주택 ③ 일반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 ④ 단지형 단독주택 ⑤ 단지형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⑥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
- ⑦ 고층 아파트(12층 이상) ⑧ 중저층 아파트 ⑨ 개인이 신축한 주택
- ⑩ 오피스텔 ⑪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 ⑫ 기타(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주택유형이 있다면?): _____

[항목 설명]

- ⑪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내에 다양한 소형주택(85㎡이하)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주택 건설기준과 부대시설기준을 완화한 주택유형으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오피스텔처럼 한 호(또는 가구)씩 분양 및 개별 등기 가능

- (문항 55-1) 지역코드 입력

55. 귀댁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사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국외

55-1. 시/군/구 이름 ()

(코드 입력

--	--	--

)

※지역코드는 조사원이 입력

- 조사원이 설문지에 기재 후 나중에 부록2 의 코드번호 3자리를 보고 기재한다.
Reg 2 시/군 코드 - 3자리 기입(8~163번까지)



■ (문 56) 주택 점유 형태 계획 : 문항 2 설명과 동일

56. 귀댁은 어떤 점유 형태의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귀댁께서 계획 중인 주택의 가격 수준과 대출 예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먼저 점유 형태를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예상 가격과 대출 예상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점유 형태																																																																														
① 자가	1-1) 그럼, 주택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table border="1"> <tr> <td>① 우리 소유의 집으로 이사</td> <td>② 상속이나 증여</td> <td>➔ 문57로 이동</td> </tr> <tr> <td>③ 신규 주택 분양</td> <td>④ 기존 주택 매입</td> <td rowspan="2">➔ 금액 질문</td> </tr> <tr> <td>⑤ 개인 신축 주택</td> <td>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td> </tr> </table>	① 우리 소유의 집으로 이사	② 상속이나 증여	➔ 문57로 이동	③ 신규 주택 분양	④ 기존 주택 매입	➔ 금액 질문	⑤ 개인 신축 주택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① 우리 소유의 집으로 이사	② 상속이나 증여	➔ 문57로 이동																																																																											
③ 신규 주택 분양	④ 기존 주택 매입	➔ 금액 질문																																																																												
⑤ 개인 신축 주택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 colspan="4">예상 가격</th> <th colspan="4">대출 예상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 구입 가격</td> <td></td> <td>억</td> <td></td> <td>만원</td> <td></td> <td>억</td> <td></td> <td>만원</td> </tr> <tr> <td>② 전세</td> <td>전세 보증금</td> <td></td> <td>억</td> <td></td> <td>만원</td> <td></td> <td>억</td> <td></td> <td>만원</td> </tr> <tr> <td>③ 보증부 월세</td> <td>보증금</td> <td></td> <td>억</td> <td></td> <td>만원</td> <td></td> <td>억</td> <td></td> <td>만원</td> </tr> <tr> <td>④ 월세</td> <td>월세 가격</td> <td></td> <td>억</td> <td></td> <td>만원</td> <td></td> <td>억</td> <td></td> <td>만원</td> </tr> <tr> <td>⑤ 사글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⑥ 무상거주</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⑦ 연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예상 가격				대출 예상 금액				주택 구입 가격		억		만원		억		만원	② 전세	전세 보증금		억		만원		억		만원	③ 보증부 월세	보증금		억		만원		억		만원	④ 월세	월세 가격		억		만원		억		만원	⑤ 사글세										⑥ 무상거주										⑦ 연세									
	예상 가격				대출 예상 금액																																																																									
주택 구입 가격		억		만원		억		만원																																																																						
② 전세	전세 보증금		억		만원		억		만원																																																																					
③ 보증부 월세	보증금		억		만원		억		만원																																																																					
④ 월세	월세 가격		억		만원		억		만원																																																																					
⑤ 사글세																																																																														
⑥ 무상거주																																																																														
⑦ 연세																																																																														

[응답 작성 요령]

- 1-1)에서 ①,② 응답자의 경우, 예상 가격과 대출 예상가격은 쓰지 않는다.

■ (문항 59) 임대주택 유형 : 문항 3 설명 동일

59. 그럼, 귀댁은 다음의 공공임대주택 중 어떤 유형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① 영구임대	② 국민임대	③ 20년 전세임대
④ 10년 전세임대	⑤ 10년 공공임대	⑥ 5년 공공임대
⑦ 기존 다가구 주택매입 임대주택	⑧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 [공공 임차 종류 설명]

① 영구임대 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할 수 있는 주택
- 전용 7~12평 규모, 영구적 임대



② 국민임대 주택

-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변 시세의 70%의 선으로 공급
- 30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주택. 분양전환 불가능
- (18평 이하) 무주택 세대주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
- (18~24평)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

③ 20년 전세 임대

- 서울시의 시프트(Shift) 주택
-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20년 동안 전세로 살 수 있음

④ 10년 전세 임대, ⑤ 10년 공공 임대, ⑥ 5년 공공임대

- LH와 지자체 등이 정부지원을 받아 건설, 5/10년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정부지원은 받지 않은 민간임대와는 다름

⑦ 기존 다가구매입 임대 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

-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10년까지 거주 가능)
- LH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후 임대(인구 20만 이상 도시에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매입 후 임대 가능)

⑧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 (문항 62, 63, 64) 주택청약

62. 귀댁(가구주, 배우자, 가족원 모두)은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① 가입하고 있지 않다 ➡ 문65로 이동 ② 가입하고 있다

63. 그럼, 귀댁의 주택청약 통장 보유 개수는 몇 개입니까?

다음의 청약 종류별로 해당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____ 개 보유 ② 청약 저축 ____ 개 보유
③ 청약예금 ____ 개 보유 ④ 청약 부금 ____ 개 보유

64. 귀댁은 언제쯤 주택청약을 신청할 계획이십니까?

-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③ 1년 후-1년 6개월 이내
④ 1년 6개월 후-2년 이내 ⑤ 향후 2년내에 청약 신청 계획이 없음

[응답 작성 요령]

- 청약통장의 종류가 많고 이름이 비슷하여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의 질문으로 확인후 정확하게 응답받는다.
- 첫번째, 납입 방식이 월납(매달 통장에 입금)인지, 선납(나누어 내지 않고 돈을 한번에 통장에 입금)인지 확인한다.
- 선납인 경우 일명 '만능통장'인지 묻고 그럴 경우 ①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하고 응답받을 것)
- 선납이지만, 만능통장이 아닌 경우는 ③청약예금.
- 월납인 경우 일명 '만능통장'인지 묻고 그럴 경우 ①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통장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하고 응답받을 것)
- 월납이지만 만능통장은 아닌 경우, 공공주택 청약에 쓰는 통장인 경우 ②청약저축, 민간아파트 청약에 쓰는 통장인 경우 ④청약부금.

[주택청약 통장의 종류 및 정의]

구 분	①주택청약종합통장	② 청약저축	③ 청약예금	④ 청약부금
불입금액	월 2~50만원 원칙 (선납가능)	월 2~10만원	200~1,500만원 (규모별·지역별 차등)	월 5~50만원
불입방식	매월 일정액 납, 선납 예치 모두 가능	매월 일정액 납	일시 선납	매월 일정액 납
가입자격	제한없음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주택소유여부 무관)	
취급은행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2009년 이후) (기존가입자 국민은행 포함)		전국 16개 은행	
대상주택	모든 주택	(공공주택) 33평 (전용 25.7m ²) 이하 공공주택	(민간주택) 모든 평형 (공공주택) 33평 이상	(민간주택) 33평 이하



■ (문항 66) 가구원수

66. (가구를 포함하여) 현재 귀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명
--	--	---

[응답 작성 요령]

- 동거하는 가구원 수만 기재한다.(유학, 군대 등의 사유로 비동거 가구원 제외)
- 가구원에 대한 구체적 개념은 20p. 설명 참고

■ (문항 75) 장애인

75. 귀택에는 귀하를 포함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예 :

 명

② 아니오

[응답 작성 요령]

- 실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가구원을 말한다.
- 장애등급 없이 장애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문항 79) 직업

79. 귀댁 가구주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준전문가 | ③ 사무 업무 | ④ 서비스업 |
| ⑤ 판매업 | ⑥ 농림어업 | ⑦ 기능직 업무(가공 등)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 ⑨ 단순노무 | ⑩ 군인·군무원 | ⑪ 무직 | ⑫ 학생 |
| ⑬ 주부 | ⑭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 | |

[직업 분류 표]

① 관리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기업체의 영업소 및 지점의 소장(총괄적인 관리 수행), 정부행정부서의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연구원(과학, 정보통신, 공학),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임상병리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 건축캐드원, 성직자, 대학교수, 대학시간강사, 장학관, 대학조교,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산운용가, 감정평가사, 경매사, 중개사, 큐레이터, 사서, 쇼핑호스트, 촬영기사, 아나운서, 화가, 배우, 가수, 경기감독 및 코치, 직업운동선수, 마술사 등
③ 사무종사자	공공행정 사무(조세, 행정, 병무, 특허, 감사, 통계, 총무, 기획, 자재, 교육), 회계(경리)사무원, 비서, 출판사무원, 전화상담원(전화안내원), 속기사, 운송관련 사무원 등
④ 서비스종사자	경찰관, 경호원, 무인경비원, 청원경찰, 교도관, 주차단속원, 간병인, 이(미)용사, 분장사, 장례지도사, 객실승무원(항공, 선박, 열차), 여행가이드, 딜러, 캐디, 통역원, 주방장(조리사), 바텐더, 웨이터, 결혼상담원, 오락(PC방, 노래방)서비스원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종사자(자동차, 보험), 매장판매종사자, 매장계사원, 요금정산원, 상품대여종사자, 방문판매원, 텔레마케터, 행사홍보 도우미, 매표원, 노점(이동)판매원, 판촉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작물(곡식, 채소, 특용, 과수, 원예)재배종사자, 조경원, 축산및사육관련종사자, 벌목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향봉종사원, 감별사, 수렵종사원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정육원, 도축원, 재봉사, 재단사, 의복(한복 · 양장)제조원, 가구제조원, 금형원, 용접원, 자동차정비원, 항공기정비원, 설치원(승강기, 기계, 공조기, 보일러, PC, 사무기기, 인터넷), 각종 수리원, 전기공, 건축목공, 미장공, 도배공, 광원, 공예원, 배관공, 방역원 등
⑧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각종 기계(식품가공, 섬유 및 신발, 화학, 금속, 전기, 전자, 상하수도, 목재, 인쇄, 재활용처리, 사진)조작원,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산업용로봇조작원, 자동차·자동차부품조립원, 기관사, 운송관련(택시, 버스, 화물, 배, 특수, 기중기 등)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단순노무자, 이삿짐운반원, 집배원, 택배원, 배달원(음식 · 신문), 수동포장원, 단순선별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주방보조원, 주유원, 산불감시원, 가스검침원, 수금원, 주차관리(안내)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검표원 등

[응답 작성 요령]

- 자영업자/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으로 표시한다



■ (문항 80) 근무 형태

80. 귀택 가구주의 **근무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 | |
|----------------|------------|----------------|
| ① 상용근로자 | ② 임시·일용근로자 |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⑤ 무급가족종사자 | |

[응답시 유의 사항]

- 업종이 아닌 근무 형태(근로자 /자영업자(사업 포함)로 받는다

[용어의 정의]

① 상용 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② 임시·일용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인 경우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 일급으로 받는 경우

③ 고용원을 둔 사업주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
-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 기업이면 자영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 근로자로 분류한다.

⑤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가족종사자라도 일정한 봉급을 받을 때는 임금근로자로 분류한다.



■ (문항 83) 소득의 기준

83. 다음은 귀댁 **가구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원**에 대한 세금을 내기 전 소득입니다.

각 소득의 유/무를 먼저 응답하시고, '있다'는 경우에만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 구분	①있다	②없다	금액					
1) 근로소득 (근로자의 경우)	1	2	월					만원
2) 사업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1	2	월					만원
3) 금융 이자 소득	1	2	월					만원
4) 부동산 임대 소득	1	2	월					만원
5) 각종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퇴직 연금, 주택 연금, 농지 연금 등)	1	2	월					만원
6)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 (기초노령연금, 생계비 지원금, 장애 수당 등)	1	2	월					만원
7) 기타 소득	1	2	월					만원
8) 상기 소득의 합계			월					만원

[소득 기준 정의]

1) 근로 소득	근로(일)의 댓가로 벌어들인 수입(상여금 등 포함)
3) 금융 이자 소득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 또는 채권 등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는 않는 경우(주식의 시세가 높아졌으나 실제 주식을 사고 팔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4)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 임대료, 부동산 매매 차익 등(전세금은 포함되지 않음)
6)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	장애 수당 또는 장애 아동 수당, 경로 연금, 노인교통비, 모/부자가정수당, 정위탁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학비 지원,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응답 작성 요령]**

- 지난해(2011.1.1~12.31) 소득의 월평균 금액으로 응답 받는다.
- 세금을 내기 전의 기준으로 응답 받는다.
- 월 평균 금액으로 응답받는다. 연 소득으로 응답할 경우 12로 나누어 기입한다.
- 모든 소득은 가구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받는다.
- 8) 상기 소득의 합계는 응답받은 모든 소득의 합과 같아야 한다.

■ (문항 84~문항87) 직장/통근의 기준

84. 위 보기에서 귀택의 가구주가 직장까지 가는 주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하나만 응답) ()

85.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위 보기에서 가구주의 배우자가 직장까지 가는 주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86. 위에서 응답하신 주된 교통수단으로 귀택의 가구주가 직장까지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 정도입니까?

분

87.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귀택 가구주의 배우자가 직장까지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 정도입니까?

분

[응답 작성 요령]

- 출근 기준으로 응답받는다.
- 출근에 2가지 이상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이용하는 교통 수단을 응답받는다.
-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 0분으로 응답받는다.
-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가는 곳을 기준으로 응답받는다.
- 프리랜서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자주 가는 곳 기준으로 응답받는다.



3. 문항간 일관성 유지 관련 유의 사항 (문항별 베이스, 논리 오류 유의 필요한 문항)

사전에 숙지하되 응답자에게 모든 문항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점검

- (문항 1~ 문항 6) Part I의 유의 사항
 -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재 주택과 현재 주택에 이사 오기 직전에 거주했던 직전 주택에 대해 모두 응답받아야 한다.
 - 현재 주택과 직전 주택에 대해 모두 응답받아야 하며, 가구주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이사를 안 한 경우에는 현재 주택에 대해서만 응답을 받는다.
- (문항 2/ 문항 24) 논리 오류 크로스체크 필요
 - 문항 2에서 전세나 자가의 경우 월세가 없음에도 문항 24에서 ②번 응답이 나온다면, 문항 24의 응답이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한다.
- (문항 10/ 문항 31) 일관성 크로스체크 필요
 - 문항 10. 4) 방음 상태가 양호하다고 한 경우에, 문항 31에서 ⑦ 층간 소음 등으로 시끄러워 불만이라고 응답한다면 둘 중 하나는 오류 일 수 있으므로 확인 한다.
- (문항 11/문항 15/문항 23) 문2와의 크로스체크 필요
 - 면접원은 응답자의 주택 점유 형태(문2)에 대해 숙지하여 뒷부분에 건너뛰어 문항과 응답할 문항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동일 기준으로 응답해야 한다.
- (문항 13/ 문항 23) 일관성 크로스체크 필요
 - 문항 13. ①②③응답한 경우(월세 부담된다는 의견)는 문23. 3-1) 보증금 수준 및 매달 월세 부담이나 4-1) 매달 월세 부담이 ①②③이 나오면(월세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견) 재확인 할 것
- (문항 14/ 문항 24) 일관성 크로스체크 필요
 - 문항 14에서 4)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자금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문항 24에서 ⑨번 응답이 나온다면, 둘 중 하나는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한다
- (문항 45) 논리 오류 크로스체크 필요
 - 주택 소유자에게만 물어보는 질문이므로 2채 이상 나와야 한다.
- (문항 45/ 문항 21) 논리 오류 크로스체크 필요
 - 문항 45 응답자(현재 2채 이상을 소유)만 문항 21에서 ① 응답이 가능하다.



- (문항 50) Part VII 유의 사항
 - 문50에서 2년 이내 이사 계획이 없는 경우, 문58로 이동한다.
- (문항 57/ 문항 48-1) 논리 오류 크로스체크 필요
 - 문항 57에서 ① 매매(양도)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 현 소유 주택을 팔 의향을 묻는 문항 48-1에도 ① 있다 응답을 해야 한다
- (문항 68) 가구주 연령대 확인
 - 1page의 가구주 연령대, 문항 68 에서의 가구주 출생년도 기준의 연령이 일관되어야 한다. 다를 경우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문항 72/ 문항 73) 논리 오류 크로스체크 필요
 - 문항 72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수는 문항 73의 전체 자녀수와 대비하여 같거나 적어야 한다
- (문항 41/문항 66/문항 67/문항 69)
시기/기간 관련 논리적 오류 체크해볼 사항
 - 가구주 출생년도(문항 67)가 가장 빨라야 한다
 - 가구주가 된 기간(문항 66),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기(문항 41)과 거주년도(문항 43) 체크해야 한다. (거주년도는 가구주가 된 이후 기준으로 계산)
 - 가구주가 된 기간(문항 66)은 가구주 결혼 년도(문항 69)은 상황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서로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결혼을 하지 않거나 단독 가구주 등 특수한 경우도 많으므로 결혼년도와 주택 구입시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음.)
- (문항 82/문항 83) 월 소득 금액 합계 체크 필요
 - 월 소득과 문83의 8) 상기 소득의 합계는 모순이 없어야 한다.
(다를 경우 재질문하여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확인한다)



4. Base Check

문번호	응답기준(Base기준)	유의 사항
문1	전체	직전 주택이 없을 경우 현재주택만 응답
문2	전체	직전 주택이 없을 경우 현재주택만 응답
문3	문2 ②③④⑤ 응답자	직전 주택이 없을 경우 현재주택만 응답
문4	전체	직전 주택이 없을 경우 현재주택만 응답
문4-1	전체	아파트 외 거주자는 ③만 응답
문4-2	문4-1 ③ 응답자	개별 난방 방식 세대만 응답
문5	전체	직전 주택이 없을 경우 현재주택만 응답
문6	전체	직전 주택이 없을 경우 현재주택만 응답
문7	전체	
문8	전체	
문9	전체	
문10	전체	
문11-1	문2 ① 응답자	자가 거주 가구는 현재 주택가격, 구입 LT점, 구입 시점 주택가격을 모두 응답
문12-2	문2의 ②③④⑤ 응답자	전세/보증부 월세/월세/ 사글세 응답자는 각각 해당 칸의 보증금 및 월세만 기입
문12	문2 ③④ 응답자	
문13	문12 ③④⑤ 응답자	
문14	전체	총 합이 100이 되어야 함
문15	문14. 4) ① 응답자	금융기관 대출자만 응답
문16	문14. 4) ① 응답자	금융기관 대출자만 응답
문17	문14. 4) ① 응답자	금융기관 대출자만 응답
문18	문14. 4) ① 응답자	금융기관 대출자만 응답
문19	문14. 4) ① 응답자 AND 문18. 1원 이상 응답자	금융기관대출자이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0	문14. 4) ① 응답자① 응답자 AND 문18. 1원 이상 응답자	금융기관대출자이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만 응답
문21	전체	
문22	전체	
문23	문 2 응답 기준으로 응답	
문24	전체	
문25	전체	가구주가 된 이후 응답(모든 문항)
문26	직전 주택이 있는 경우	직전 주택이 없을 경우는 문 30으로 이동 (I 파트와 맞출 것)
문27	직전 주택이 있는 경우	
문28	직전 주택이 있는 경우	
문29	직전 주택이 있는 경우	
문30	전체	
문31	문30의 ④⑤ 응답자	
문32	전체	
문33	직전 주택이 있는 경우	직전 주택이 없을 경우는 문36으로 이동
문34	직전 주택이 있는 경우	
문35	직전 주택이 있는 경우	
문36	전체	
문37	전체	
문38	전체	
문39	문38 ① 응답자	문38 ① 응답자는 문39 질문후 문50 이동



문번호	응답기준(Base기준)	유의 사항
문40	문38 ② 응답자	문40 ①③ 응답자는 문44로 이동
문41	문38 ② 응답자 AND 문40 ② 응답자	
문42	문38 ② 응답자 AND 문40 ② 응답자	
문43	문38 ② 응답자 AND 문40 ② 응답자	
문44	문38 ② 응답자	
문45	문38 ② 응답자	
문46	문38 ② 응답자	
문47	문38 ② 응답자	
문48	문38 ② 응답자	
문48-1	문38 ② 응답자	
문48-2	문38 ② 응답자 AND 문 49-1 ① 응답자	
문49	문38 ② 응답자 AND 문2 ① 이외 응답자	
문50	전체	문50 ③④⑤⑥ 응답자는 문 58로 이동
문51	문50 ①② 응답자	
문53	문50 ①② 응답자	
문54	문50 ①② 응답자	
문55	문50 ①② 응답자	
문56	문50 ①② 응답자	각각 해당 점유형태만 가격, 용자금액 응답
문57	문50 ①② 응답자 AND 문2 ① 응답자	
문58	전체	
문59	문58 ① 응답자	
문60	전체	
문61	문60 ① 응답자	문61 ② 응답자는 문62로 이동
문62	전체	
문63	문62 ② 응답자	
문64	문62 ② 응답자	
문65	전체	
문66	전체	
문67	전체	
문68	전체	
문69	문68 ② 응답자	
문70	문68 ② 응답자	
문71	전체	
문72	전체	
문73	전체	
문74	전체	
문75	전체	
문76	전체	
문77	전체	
문78	전체	
문79	전체	
문80	전체	
문81	전체	
문82	전체	
문83	전체	
문84	전체	
문85	문68 ② 응답자	
문86	전체	
문87	문68 ② 응답자	



부 록

1. 주택평수 환산표
2. 지역 코드 입력 기준



부록 1. 주택평수 환산표

평	m ²	평	m ²	평	m ²	평	m ²	평	m ²
6	20	17	56	28	93	39	129	50	165
7	23	18	60	29	96	40	132	51	169
8	26	19	63	30	99	41	136	52	172
9	30	20	66	31	103	42	139	53	175
10	33	21	70	32	106	43	142	54	179
11	36	22	73	33	109	44	146	55	181
12	40	23	76	34	112	45	149	56	185
13	43	24	79	35	116	46	152	57	188
14	46	25	83	36	119	47	155	58	192
15	50	26	86	37	122	48	159	59	195
16	53	27	89	38	126	49	162	60	198



부록 2. 지역 코드 입력 기준

- 설문지 겉표지
 - 면접원 기재사항 부분에서 지역 코드는 16개 시/도(Reg1), 시/군(Reg2), 기초자치단체(Reg3)까지 다 기입
- 문 28-1
 - 첫번째 세칸은 시/군 코드(Reg2), 두번째 세칸은 기초자치단체코드(Reg3)까지 기입
- 문 55-1
 - 시,군코드만 입력(Reg2 : 8~ 163)(3자리)

Reg1 16개 시도 코드		Reg2 시,군 코드		Reg3 기초자치단체 코드			
서울특별시	01	서울특별시	01	서울특별시	종로구	01	
부산광역시	02	부산광역시	02		중구	02	
대구광역시	03	대구광역시	03		용산구	03	
인천광역시	04	인천광역시	04		성동구	04	
광주광역시	05	광주광역시	05		광진구	05	
대전광역시	06	대전광역시	06		동대문구	06	
울산광역시	07	울산광역시	07		중랑구	07	
경기도	08	경기도	수원시		08	성북구	08
강원도	09		성남시		09	강북구	09
충청북도	10		의정부시		10	도봉구	10
충청남도	11		안양시		11	노원구	11
전라북도	12		부천시		12	은평구	12
전라남도	13		광명시		13	서대문구	13
경상북도	14		평택시		14	마포구	14
경상남도	15		동두천시		15	양천구	15
제주도	16		안산시		16	강서구	16
			고양시		17	구로구	17
			과천시		18	금천구	18
			구리시		19	영등포구	19
			남양주시		20	동작구	20
			오산시		21	관악구	21
			시흥시		22	서초구	22
			군포시		23	강남구	23
			의왕시		24	송파구	24
			하남시		25	강동구	25
			용인시	26	부산광역시	중구	26
			파주시	27		서구	27
			이천시	28		동구	28
			안성시	29		영도구	29
			김포시	30		부산진구	30



Reg1 16개 시도 코드	Reg2 시,군 코드			Reg3 기초자치단체 코드			
		화성시	31		동래구	31	
		광주시	32		남구	32	
		양주시	33		북구	33	
		포천시	34		해운대구	34	
		여주군	35		사하구	35	
		연천군	36		금정구	36	
		가평군	37		강서구	37	
		양평군	38		연제구	38	
	강원도	춘천시	39		수영구	39	
		원주시	40		사상구	40	
		강릉시	41		기장군	41	
		동해시	42	대구광역시	중구	42	
		태백시	43		동구	43	
		속초시	44		서구	44	
		삼척시	45		남구	45	
		홍천군	46		북구	46	
		횡성군	47		수성구	47	
		영월군	48		달서구	48	
		평창군	49		달성군	49	
		정선군	50	인천광역시	중구	50	
		철원군	51		동구	51	
		화천군	52		남구	52	
		양구군	53		연수구	53	
		인제군	54		남동구	54	
		고성군	55		부평구	55	
		양양군	56		계양구	56	
	충청북도	청주시	57		서구	57	
		충주시	58	강화군	58		
		제천시	59	웅진군	59		
		청원군	60	광주광역시	동구	60	
		보은군	61		서구	61	
		옥천군	62		남구	62	
		영동군	63		북구	63	
		진천군	64		광산구	64	
			괴산군	65	대전광역시	동구	65
			음성군	66		중구	66
단양군			67	서구		67	
증평군			68	유성구		68	
천안시	69		대덕구	69			
충청남도	공주시	70	울산광역시	중구	70		
	보령시	71		남구	71		
	아산시	72		동구	72		
	서산시	73		북구	73		
	논산시	74		울주군	74		



Reg1 16개 시도 코드	Reg2 시,군 코드			Reg3 기초자치단체 코드			
		계룡시	7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75
		금산군	76			권선구	76
		연기군	77			팔달구	77
		부여군	78			영통구	78
		서천군	79			수정구	79
		청양군	80		성남시	중원구	80
		홍성군	81			분당구	81
		예산군	82			의정부시	82
		태안군	83		안양시	만안구	83
		당진군	84			동안구	84
	전라북도	전주시	85		부천시	원미구	85
		군산시	86			소사구	86
		익산시	87			오정구	87
		정읍시	88			광명시	88
		남원시	89			평택시	89
		김제시	90			동두천시	90
		완주군	91		안산시	상록구	91
		진안군	92			단원구	92
		무주군	93		고양시	덕양구	93
		장수군	94			일산동구	94
		임실군	95			일산서구	95
		순창군	96			과천시	96
		고창군	97			구리시	97
		부안군	98			남양주시	98
	전라남도	목포시	99			오산시	99
		여수시	100			시흥시	100
		순천시	101			군포시	101
		나주시	102			의왕시	102
		광양시	103			하남시	103
		담양군	104		용인시	처인구	104
		곡성군	105			기흥구	105
		구례군	106			수지구	106
		고흥군	107			파주시	107
		보성군	108			이천시	108
		화순군	109			안성시	109
		장흥군	110			김포시	110
		강진군	111			화성시	111
		해남군	112			광주시	112
		영암군	113			양주시	113
		무안군	114		강원도	포천시	114
		함평군	115			여주군	115
		영광군	116			연천군	116
		장성군	117			가평군	117
		완도군	118			양평군	118
		진도군	119			춘천시	119



Reg1 16개 시도 코드	Reg2 시,군 코드			Reg3 기초자치단체 코드				
		신안군	120			원주시	120	
	경상북도	포항시	121			강릉시	121	
		경주시	122			동해시	122	
		김천시	123			태백시	123	
		안동시	124			속초시	124	
		구미시	125			삼척시	125	
		영주시	126			홍천군	126	
		영천시	127			횡성군	127	
		상주시	128			영월군	128	
		문경시	129			평창군	129	
		경산시	130			정선군	130	
		군위군	131			철원군	131	
		의성군	132			화천군	132	
		청송군	133			양구군	133	
		영양군	134			인제군	134	
		영덕군	135			고성군	135	
		청도군	136			양양군	136	
		고령군	13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37
		성주군	138				홍덕구	138
		칠곡군	139				충주시	139
			예천군	140			제천시	140
	봉화군		141			청원군	141	
	울진군		142			보은군	142	
	울릉군		143			옥천군	143	
	경상남도		진주시	144			영동군	144
		통영시	145			진천군	145	
		사천시	146			괴산군	146	
		김해시	147			음성군	147	
		밀양시	148			단양군	148	
		거제시	149			증평군	149	
		양산시	1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50
		창원시	151				서북구	151
		의령군	152				공주시	152
		함안군	153				보령시	153
		창녕군	154				아산시	154
		고성군	155				서산시	155
		남해군	156				논산시	156
		하동군	157			계룡시	157	
		산청군	158			금산군	158	
		함양군	159			연기군	159	
		거창군	160			부여군	160	
	합천군	161			서천군	161		
	제주도	제주시	162			청양군	162	
		서귀포시	163			홍성군	163	



Reg1 16개 시도 코드	Reg2 시,군 코드	Reg3 기초자치단체 코드	
		예산군	164
		태안군	165
		당진군	1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67
		전주시 덕진구	168
		군산시	169
		익산시	170
		정읍시	171
		남원시	172
		김제시	173
		완주군	174
		진안군	175
		무주군	176
		장수군	177
		임실군	178
		순창군	179
		고창군	180
		부안군	181
	전라남도	목포시	182
		여수시	183
		순천시	184
		나주시	185
		광양시	186
		담양군	187
		곡성군	188
		구례군	189
		고흥군	190
		보성군	191
		화순군	192
		장흥군	193
		강진군	194
		해남군	195
		영암군	196
		무안군	197
		함평군	198
		영광군	199
		장성군	200
		완도군	201
		진도군	202
		신안군	2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4
		포항시 북구	205
		경주시	206
		김천시	207
		안동시	208



Reg1 16개 시도 코드	Reg2 시,군 코드	Reg3 기초자치단체 코드	
		구미시	209
		영주시	210
		영천시	211
		상주시	212
		문경시	213
		경산시	214
		군위군	215
		의성군	216
		청송군	217
		영양군	218
		영덕군	219
		청도군	220
		고령군	221
		성주군	222
		칠곡군	223
		예천군	224
		봉화군	225
		울진군	226
		울릉군	227
	경상남도	진주시	228
		통영시	229
		사천시	230
		김해시	231
		밀양시	232
		거제시	233
		양산시	234
		의창구	235
		성산구	236
		창원시 마산합포구	237
		마산회원구	238
		진해구	239
		의령군	240
		함안군	241
		창녕군	242
		고성군	243
		남해군	244
		하동군	245
		산청군	246
		함양군	247
		거창군	248
		합천군	249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250
		서귀포시	251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해양부 감사담당관

전화
상담

TEL: 044)201-3124 FAX: 044)201-5506